

논문 발행 및 심사 규정

2019년 11월 5일 제정

2023년 10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에 있어서의 원고의 심사,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명)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비교과교육연구”라고 칭한다.

제3조(주관)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4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회의 학술지는 연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발간일은 1호는 6월 30일, 2호는 12월 31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5조(게재논문의 내용)

본 학술지는 비교과 교육 분야의 유기적 연계 및 협동을 통하여 비교과 교육 주요 문제의 이론과 실체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및 그 결과의 발표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본 학술지에는 비교과 교육 분야의 연구 논문, 서평, 학술 기획물 등을 실는다.

제6조(원고모집 시기)

원고모집 시기는 논문발행 60일 전까지로 한다.

제7조(투고방법)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학술지 원고 투고규정에 제시된 논문작성원칙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한다.

제8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박사학위소지자
2. 심사대상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자
3. 기타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위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

제9조(심사위원의 선임)

- ① 투고된 각 논문마다 심사위원 3인 이상 선임한다.
-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1/2 이상의 동의에 의해 선임한다.
- ③ 논문심사위원 풀제도(pool system)를 운영하여 각 시기의 투고논문의 내용과 방법론에 적합한 국내전문가 또는 연구방법 전문가에 해당하는 전문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선임한다.

제10조(심사과정에서 편집위원회의 의무)

-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에 맞게 원고가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이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인지를 확인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④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여, 심사위원이 투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논문 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⑥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필자에게 통지할 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 사본을 첨부한다.
- ⑦ 논문 심사가 완료된 후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11조(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역할)

- ①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에 의해 별도로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를 받는다.
- ② 심사위원들은 각 논문에 대해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를 판단한다.
- ③ 심사평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 심사 양식을 사용한다.

- ④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기준)

심사기준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항목 당 배점은 10점으로 한다.

1. 연구주제의 명료성 : 연구주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본 학술지 취지에 적합한가
2. 국문 및 영문 초록 작성의 적절성 : 국문 및 영문 초록에 연구 목적·방법·대상·결과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3. 선행연구 검토의 충실성 :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선행연구의 고찰은 충실한가
4. 연구 방법의 타당성 :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은 연구 주제와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가
5. 자료 분석 및 결과 제시의 적절성과 충실성 :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설계, 자료수집과 분석, 결과 제시는 적절하고 충실한가
6. 논문 전개의 체계성 : 논문 전체와 각 부분의 짜임새는 체계적인가
7. 결론 도출의 적절성 : 연구 결과로부터 적절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가
8. 논문의 질적 우수성 및 독창성 : 연구문제 선정과 연구수행 과정 및 도출된 결론의 학술적 수준과 독창성
9. 인용 및 참고문헌 작성의 정확성 : 인용과 참고문헌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가
10. 학문적·실제적 기여도 : 학문적 연구와 교육 현장 활용의 면에서 기대되는 기여 정도

제13조(심사결과의 판정)

-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게재가 : 세 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로 심사한 경우는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한다.
 2. 수정 후 게재 : 수정사항이 경미하고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경우로 저자의 논문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 논문이 대폭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하는 경우로 수정한 내용은 초심 심사위원을 재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게재 불가 : 논문의 내용이 본 학술지에 적합하지 않고 논문 내용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로 게재가 불가능하다.
- ②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③ 논문 재심 신청은 1회에 한하며, 재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투고자의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친 후 게재하도록 한다.

④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가 불가능하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편집위원회 결정)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편집위원회 결정)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거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14조(논문심사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

논문에 대한 심사는 예비심사,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나누어 진행한다.

1. 예비심사는 편집위원이 수행한다.
2.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들이 선임되어 비공개로 수행된다.
3. 각 심사위원은 제12조 제3항과 제13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의 심사내용을 기술

하고,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4. 편집위원회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며,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5.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논문의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6. 1차, 2차 심사결과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논문을 최종 확정한다.
7.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8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8. 원칙적으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은 ‘게재불가’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다음 호에 재투고 하도록 한다. 재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은 초심 심사위원으로 다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논문의 심사과정에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15조(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양질 논문의 게재를 촉진하기 위해 『비교과교육연구』 심사용 논문의 투고비용, 논문심사료, 게재료는 한국대학비교과교육협의회, 한국비교과교육학회가 부담한다.

제16조(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학술지의 구성 및 편집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내에 편집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2. 국문논문은 국문제목, 저자명(소속),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 내용,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주요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3. 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저자(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내용, 참고문헌, 국문초록, 국문주요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4. 제1저자(주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부분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1저자 다음의 순서로 표기한다.

제17조(판권)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대학비교과교육협의회 한국비교과교육학회’가 소유한다.

제18조(예산)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본 학회의 지원금과 발표자의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 기타 외부 지원기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게재예정증명서)

본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2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이 규정은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